

##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### □ 제안이유

- 여성회관 특별 수강료의 인상을 고려하여 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며, 유아수탁료를 월 단위기준외 1일 단위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가. 별표에 기재된 유아수탁료를 월 기준외 1일기준 5,000원을 추가로 신설 (안 [별표] 4. 유아 수탁료)
- 나. 별표에 기재된 교육생 수강료를 각 5,000원~15,000원 인상하고 특별(교양)교육과정을 특별강좌교육과정으로, 주부대학을 여성(의식)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함 (안 [별표] 5. 교육 수강료)

### 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파주시 여성회관의 운영을 위해 지난 99년 6월 12일 제정되고 2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는 “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” 중 별표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

##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[1999. 6. 12 조례 제281호]

<개정 1999. 10. 30 조례 제300호/ 2000. 11. 14 조례 제360호>

**제6조(사용료 및 수수료)** ①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"별표"와 같다.

②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별표4. 유아 수탁료

| 구 분     | 기 준     | 요 액     | 비 고   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교육수강생자녀 | 1인 / 1월 | 15,000원 | 오전, 오후반운영 |

별표5. 교육생 수강료

| 구 분        | 기 준    | 요 액  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술교육과정     | 1인 1개월 | 10,000원-<br>15,000원  | ○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.<br>○교육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도 10일 이상일 때에는 1월로 본다 |
| 취미교육과정     | 1인 1개월 | 10,000원 -<br>15,000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별(교양)교육과정 | 1인 1개월 | 10,000원-<br>15,000원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 부 대 학    | 1인 1개월 | 10,000원-<br>15,000원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○ 별표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
- 별표 2,3,4,5호 서식 내용중 "요액"을 "금액"으로 각각 개정하고
- 별표4호 유아수탁료 내용중 "1인당 매월 15,000원"을 받는 기준외에 "1인1일 수탁료로 5,000원"을 받는 내용을 추가하여 하루중 몇시간 또는 1일단위로 실시하는 각종교육에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이 가급적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- 아울러 별표 5호 "교육생수강료"를 교육과정별로 그 성격에 따라 5,000원에서 15,000원 까지 각각 인상하고, 2개의 교육과정 명칭을 변경하였음.

## <유아수탁료 및 교육생수강료 개정내역>

[별표]4. 유아수탁료 개정안

| 현 행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개 정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구 분         | 기 준   | 요 액     | 비 고      | 구 분      | 기 준   | 금 액     | 비 고      |
| 교육수강생<br>자녀 | 1인/1월 | 15,000원 | 오전,오후반운영 | 교육수강생 자녀 | 1인/1월 | 15,000원 | 오전,오후반운영 |
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1인/1일 | 5,000원  | 주간교육에 한함 |

[별표]5. 교육생 수강료 개정안

| 구 분        | 기 준   | 금 액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|       | 현 행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술교육과정     | 1인1개월 | 10,000-15,000원 | 15,000-20,000원 | ○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<br>○ 교육기간이 1월미만 인 경우 10일 이상일 때에는 1월로 본다. |
| 취미교육과정     | 1인1개월 | 10,000-15,000원 | 15,000-20,000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별강좌교육과정   | 1인1개월 | 10,000-15,000원 | 15,000-30,000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여성(의식)교양교육 | 1인1개월 | 10,000-15,000원 | 15,000-20,000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개정내용중 교육생 수강료는 과정별로 5,000원에서 15,000원 까지 최소 33%에서 최고 50%까지 인상하고, 이중 특별강좌 및 교육과정은 50%에서 100%까지 인상하였으며, 수강료 인상근거로는 도내에 설립된 14개 여성회관 및 문화센터에서 받고있는 수강료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·판단하고 있는데, 이 경우 파주시는 월15,000원으로 파주시와 수강료 수준이 같거나 낮은 곳은 10개소, 파주시보다 높은 곳은 고양, 광명, 군포, 부천시 등 4개소로 나타나고 있음.

## <시군별 여성회관 수강료 현황>

| 시설명칭        | 수강료              | 시설명칭      | 수강료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고양시여성회관     | 월 12,000-20,000원 | 성남시여성복지회관 | 월 10,000원           |
| 광명시여성회관     | 월 12,000-20,000원 | 안성시여성회관   | 월 12,000원           |
| 군포시여성회관     | 월 12,000-20,000원 | 양평군여성회관   | 월 10,000-15,000원    |
| 부천시 북사골문화센터 | 월 12,000-19,000원 | 안산시여성회관   | 월 10,000원           |
| 안양시여성회관     | 월 10,000-15,000원 | 의왕시여성회관   | 월 10,000원           |
| 파주시여성회관     | 월 15,000원        | 평택시여성회관   | 월 2,500-6,000원      |
| 경기도여성회관     | 월 10,000원        | 포천군여성회관   | 월 6,250-8,750원      |
| 경기도북부여성회관   | 월 10,000원        | 15개시설     | 최저 2,500-최고 20,000원 |

- 따라서, 현행 월 수강료 15,000원(1기과정 3개월분 45,000원)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, 금번에 인상될 경우 월 15,000 - 20,000원(1기과정 3개월분은 최저 45,000에서 최고 60,000원)이고, 특별교육과정은 월 15,000 - 30,000원(1기과정 3개월분 최저 45,000원-최고 90,000원) 수준으로 고양, 광명, 군포, 부천시 수준과 같거나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.
- 그러나, 이와 같은 수강료의 인상은 교육참여 시민들에게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, 보다 우수한 강사를 채용하여 과정별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갖는 문제이므로 단순히 도내 다른 교육시설과 형평성만을 고려해 결정해서도 안될 사안이라고 생각됨.
- 그러므로 집행부 소관부서에서는 수강료 인상안에 대해 10일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중('02.11.13-11.23)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수강료 인상 요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, 또한, 동 안건이 결정되면 인상에 따른 이용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되므로 시행전 충분한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